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1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양기대·김영배·서영교

김경협 • 박재호 • 김진표

김영진 • 이형석 • 백혜련

김수흥 • 고용진 • 우원식

김민철 · 김주영 · 홍영표

오영환 · 이해식 · 박완주

정일영 · 김성주 · 오영훈

임호선 · 양경숙 · 한병도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및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2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32회기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것임.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생	제14조(재정 특례)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⑤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	
고 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	
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	
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u>「지방세법」 제71조제</u>	
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자치	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시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에 해	<u>가목</u>
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	
분의 36으로 한다.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법률 제168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제5항의	제2조(적용시한)
개정규정은 <u>2022년 12월 31일</u> 까	<u>2026년 12월 31일</u>
지 효력을 가진다.	